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5593
------------	-------

제출연월일 : 2025. 12. 24.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제17조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